

2 주민 절차 신고

정주 외국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요 법률 관계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 신고

중장기 재류자로 일본에 신규로 입국하는 분(공항 등에서 재류카드의 교부를 받은 분, 또는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 교부'의 스탬프가 찍힌 분)은 시·구·정에 새로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재류카드(공항 등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여권)를 지참하여 거주하시는 시·구·정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전출 신고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따라 외국인 분도 다른 시·구·정·촌에 이사하실 때는 거주하시던 시·구·정에서 전출 신고를 함과 동시에 새로 거주하실 시·구·정·촌에서 전입 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 이사할 때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

일본 국내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절차>

혼인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p>요건 구비 증명서</p> <p>외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본국의 법에 따라 혼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요건 구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p>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나라인 경우에는 이것을 대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	--

B	<p>증인</p> <p>성인인 사람으로 신청자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증인 본인이 이름, 주소, 국적(일본인인 경우는 본적)을 작성하고 도장(외국인은 서명)을 찍습니다.</p>
---	---

◆주의사항◆

① 국제결혼에 따른 일본인 성씨의 변동

일본인이 성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정에 신고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법상의 성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씨를 변경했을 때는 14 일 이내에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에서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재류카드, 증명 사진 및 변경 후의 성씨가 기재된 여권, 결혼 증명서입니다.

② 혼인신고의 본국에서의 절차

외국인 분은 자국에서 결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관계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국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외

혼인신고의 방법과 혼인에 따른 국적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국 관계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및 시·구·정 사무소의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을 변경했을 때는 14 일 이내에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에서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재류카드, 증명 사진, 새로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여권 및 기존의 국적을 상실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각국 관계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	------------------------------------



(4) 이혼

가. 외국인끼리 부부인 경우

A	<p>부부 국적이 동일한 경우</p> <p>자국의 법률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일본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p> <p>이 증명서의 취득 방법, 또는 자국 법률의 협의이혼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B	<p>부부 국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p> <p>부부 쌍방이 일본에 거주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p>

나. 부부 중 한 명이 일본인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일본인으로 일본에 거주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혼이 성립한 경우 본국에 이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시·구·정 사무소의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혼이 성립해도 자국에서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시·구·정이 접수한 이혼신고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배우자로서 재류하는 분의 경우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배우자 관계의 소멸에 관한 신고를 하십시오.

(5) 출생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14 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출생신고는 출생지·신고인의 거주지 중 어느 한쪽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외에 재류자격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류자격◆

외국인으로 태어난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60 일간은 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재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지나서 재류하려면 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에 재류자격의 취득 허가를 신청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모자건강수첩

임신했을 때 보건소(히로시마시, 구레시, 후쿠야마시) 또는 시·구·정 사무소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하면 모자건강수첩이 교부됩니다. 이 수첩은 임신의 경과, 아기의 발육, 예방접종 등을 기록하여 모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등의 진찰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실시 시간·장소·통지 방법이 시·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출산 비용 지원

사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 또는 시·구·정 사무소에 신청해 주십시오.

③ 아동수당

중학교 졸업까지(만 15 세 생일 후 최초 3 월 31 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은 인정 청구를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④ 아동부양수당

부모가 이혼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 또는 생사불명인 아동 등을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게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및 태아 인지 제도◆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혈연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단, 모자관계는 출생 사실에 따라 당연히 발생)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아 인지란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전에 사망할 경우 아버지의 임의로 인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아이에게 불편·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생 전에 인지하여 출생에 의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부자관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태아 인지를 함으로써 태어날 아이와 혈연상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에 대하여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이의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국적이 다른 부모가 태아 인지를 하는 경우 태어날 아이에게 장래의 법률상 아버지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 아이의 출생 후 취득하는 국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인 남성에게 인지된 외국인의 태아는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인지의 준거법에서는 ‘아이의 출생 당시 혹은 인지 당시의 인지하는 사람의 본국법 또는 인지 당시 아이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아 인지는 ‘아이의 본국법’을 ‘어머니의 본국법’이라고 어구를 대체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는 경우 인지 당시의 어머니 본국법에서 제삼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는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지 및 태아 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망

사망의 경우 동거 친족, 동거자, 가구주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구·정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신고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고 확실한 본인의 국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구·정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① 매장, 화장

시체를 일본에서 매장, 화장하는 경우는 ‘사체 매·화장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국에서 하는 경우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② 장례

사망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면 장례를 치렀을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구·정 사무소에 신청해 주십시오.

사망한 사람이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

③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3 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사망 일시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유족의 범위 등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연금사무소의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연금사무소
-----	-------

④ 배우자 관계의 소멸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배우자로서 재류하고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배우자 관계의 소멸에 관한 신고를 해 주십시오.

⑤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망한 분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출장소에 지참하시거나 아래 반납처로 송부하여 반납해 주십시오.

〈송부하실 경우 반납처〉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 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7-11 도쿄항만합동청사 9층

도쿄입국관리국 오다이바분실

※ 봉투 앞면에 '재류카드 등 반납(在留カード等返納)'이라고 써 주십시오.